「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년 8월 30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으며, 9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임.

I. 제안이유

○ 연도 중 보조내시 된 국·도비 보조사업 및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과 현안사업, 당초 미부담사업 및 주민 생활불편해소 등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려는 것임.

Ⅱ. 주요내용

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¹⁾의 총규모는 731,042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3,717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1,013백만원이 증액된 656,238백만원, **특별회계**는 2,704백만원이 증액되어 74,803백만원임.

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일반회계**가 세외수입 1,576백만원, 지방교부세 3,015백만원, 조정교부금등 945백만원, 국·도비보조금 2,681백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2,797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6백만원, 지방교부세 400백만원, 조정교부금등 250백만원, 국·도비보조금 1,039백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008백만원임.

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정책사업비 17,959백만원, 재무활동 3,017백만원, 행정운영 경비 36백만원, 특별회계는 정책사업비 2,566백만원, 재무활동 134백만원, 행정운영경비 4백만원임.

¹⁾ 검토보고서 중 백만원 미만 단위를 절사하고 검토한 부분은 예산안의 표시단위와 차이가 있음.

Ⅲ. 예산개요

1. 회계별 예산규모

-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731,041,679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3.35%인 23,717,142천원이 증액**된 규모임.
 - 일반회계는 656,238,426천원으로 21,013,207천원(3.31%)이 증액
 - 특별회계는 74,803,253천원으로 2,703,935천원(3.75%)이 증액 편성되었음.

【회계별 예산 규모】

		7			н	2회 추경여]산안	그 기 지	비교증	감
		구			분	예산액	%	기정액	증감액	%
		합			계	731,041,679	100.00	707,324,537	23,717,142	3.35
		일	반	회	계	656,238,426	89.77	635,225,219	21,013,207	3.31
		특	별	회	계	74,803,253	10.23	72,099,318	2,703,935	3.75
	궁	37]¢	겁특별	회계		26,691,170	3.65	25,495,658	1,195,512	4.69
		상	수도공	·기업	특별회계	26,691,170	3.65	25,495,658	1,195,512	4.69
	フ]타	특별회	계		48,112,083	6.58	46,603,660	1,508,423	3.24
		의	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586,423	0.08	586,423	0	0.00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특별회계 농공단지조성및관리 사업특별회계		213,127	0.03	213,127	0	0.00			
			및관리	1,217,039	0.17	1,196,039	21,000	1.76		
		수 ²	질개선	특별	회계	46,095,494	6.31	44,608,071	1,487,423	3.33

2.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 □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세입규모는 기정액 대비 3.31%인 21,013,207천원이 증액된 656,238,426천원임.
 - O 자체수입은 64.930.580천원으로
 - 지방세는 44.133.232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없으며
 - 세외수입은 1,575,959천원이 증액되었음.

증·감내역(세외수입)

- ▶ 공공예금 이자수입 : 3,500백만원 / 기정대비 1,000백만원 증액(40.0% ↑)
- ▶ 개발부담금 : 120백만원 / 기정대비 40백만원 증액(50.0% ↑)
- ▶ 자활센터 신축 공모사업 지원금 500백만원 / 순증
- ▶ 명태산업 광역특구 통합운영시설 사용료 13백만원 / 순증
- O 이전수입은 548,341,300천원으로
 - 지방교부세는 3,015,000천원이 증액되었고

증·감내역(지방교부세)

- ▶ 오대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1,100백만원 순증(특별교부세)
- ▶ 군도8호선(장평, 갈정지) 도로 확포장사업 800백만원 순증(특별교부세)
- ▶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 체계 구축 400백만원 순증(특별교부세)
- ▶ 힐링워케이션생활인구 지원 507백만원 증액(지방소멸대응기금)
- 조정교부금등은 944,56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감내역 (조정교부금)

- ▶ 2023년도 1회추경 편성이후 교부(내시)된 일반조정교부금 195백만원을 2회 추경예산(안)에 반영함
- ▶ 군도 15호선 보행로 정비사업 500백만원 순증(특별조정교부금)
- ▶ 전통민속상설공연장 야외무대 설치 250백만원 순증(특별조정교부금)

- 보조금은 2,680,629천원이 증액되었음.

증·감내역 (국·도비 보조금)

- ▶ 국고보조금은 기정대비 1,958백만원 증가
- · 비교 가격안정 지원 1,666백만원,
-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역혁신사업 114백만원 등 교부 또는 변경 내시된 보조금 반영 및 조정
- ▶ 시·도비보조금은 기정대비 722,505백만원 증가
 - · 비교 가격안정 지원 333백만원,
 - · 수출전문 첨단 ICT생산단지 육성 144백만원 등 교부내역 조정 반영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42,966,546천원으로 12,797,055천원이 증액되었음.

증·감내역 (지방교부세)

▶ 순세계잉여금 발생분 12,797백만원 증액하여 계상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황】

	 구 분	2회 추경예	산안	기정액	비교증	감
	十 七	예산액	%	기정택	증감액	%
	합 계	656,238,426	100.00	635,225,219	21,013,207	3.31
자	소 계	64,930,580		63,354,621	1,575,959	
체 수	지방세수입	44,133,232	6.73	44,133,232	0	0
입	세외수입	20,797,348	3.17	19,221,389	1,575,959	8.20
0]	소 계	548,341,300		541,701,107	6,640,193	
전 전	지방교부세	340,797,321	51.93	337,782,321	3,015,000	0.89
수 입	조정교부금등	12,802,331	1.95	11,857,767	944,564	7.97
	보조금	194,741,648	29.68	192,061,019	2,680,629	1.40
보전	¹ 수입등및내부거래	42,966,546	6.55	30,169,491	12,797,055	42.42

【세출예산안】

- □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세출규모는 기정액 대비 3.31%인 21,013,207천원이 증액된 656,238,426천원임.
 - 정책사업비 17,959,419천원, 재무활동 3,017,326천원, 행정운영경비 36.462천원이 증액되었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

(단위:천원)

구	분	2회추경예신	난안	기 저 애	비교증	감
	亡	예산액	%	기정액	증감액	%
합	계	656,238,426	100	635,225,219	21,013,207	3.31
정 책	사 업	533,226,735	81.25	515,267,316	17,959,419	3.49
재 무	활 동	51,571,888	7.86	48,554,562	3,017,326	6.21
행정운	영경비	71,439,803	10.89	71,403,341	36,462	0.05

○ 기능별 세출예산안은

- 일반공공행정분야는 기정액 대비 920,303천원이 증액된 34,738,254천원
- 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 1,134,428천원이 증액된 26,472,852천원
- 교육분야는 23,000천원이 증액된 9,229,289천원
- 문화및관광분야는 1,588,114천원이 증액된 90,755,833천원
- 환경분야는 1,764,959천원이 증액된 49,093,763천원
- 사회복지분야는 2,175,518천원이 증액된 114,562,885천원
- 보건분야는 71,511천원이 증액된 13,056,191천원
- 농림해양수산분야는 5,678,302천원이 증액된 141,752,034천원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는 408,880천원이 증액된 13,720,797천원
- 교통및물류분야는 4,380,202천원이 증액된 25,782,823천원
- 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 2,375,902천원이 증액된 55,239,358천원
- 예비비는 기정액 대비 변동없이 8,580,300천원
- 기타분야는 492,088천원이 증액된 73,254,047천원이 편성됨.

【기능별 현황】

(단위:천원)

7 12	2회추경예신	<u></u> 안	الم أح أ	비교증	<u> </u>
· 구 분	예산액	%	기정액	증감액	%
합 계	656,238,426	100	635,225,219	21,013,207	3.31
일반공공행정	34,738,254	5.29	33,817,951	920,303	2.72
공공질서및안전	26,472,852	4.03	25,338,424	1,134,428	4.48
교 육	9,229,289	1.41	9,206,289	23,000	0.25
문화및관광	90,755,833	13.83	89,167,719	1,588,114	1.78
환 경	49,093,763	7.48	47,328,804	1,764,959	3.73
사 회 복 지	114,562,885	17.46	112,387,367	2,175,518	1.94
보 건	13,056,191	1.9	12,984,680	71,511	0.55
농림해양수산	141,752,034	21.60	136,073,732	5,678,302	4.17
산업 · 중소기업및에너지	13,720,797	2.09	13,311,917	408,880	3.07
교통 및 물류	25,782,823	3.93	21,402,621	4,380,202	20.47
국토및지역개발	55,239,358	8.42	52,863,456	2,375,902	4.49
व्यी भी भी	8,580,300	1.31	8,580,300	0	0.00
기 타	73,254,047	11.16	72,761,959	492,088	0.68

○ 조직별 세출예산안은

- 농업기술센터 97,253,518천원(14.82%)
- 건설과 79,319,502천원(12.09%)
- 가족복지과 73,664,832천원(11.23%)
- 행정과 73,624,015천원(11.22%)순으로 편성됨.

【조직별 현황】

7 19	2회추경예신	<u></u> 산안	기기에	비교증건	<u>}</u>
구 분	예산액	%	기정액	증감액	%
합 계	656,238,426	100	635,225,219	21,013,207	3.31
본 청	520,862,684	79.37	504,972,960	15,889,724	3.15
기 획 실	20,349,616	3.10	20,186,034	163,582	0.81
정 책 담 당 관	378,440	0.06	378,440	0	0.00
행정지원국	233,793,516	35.63	230,318,278	3,475,238	1.51
행 정 과	73,624,015	11.22	73,204,498	419,517	0.57
올림픽체육과	44,969,415	6.85	44,261,479	707,936	1.60
복지정책과	22,401,363	3.41	21,386,014	1,015,349	4.75
가족복지과	73,664,832	11.23	73,059,243	605,589	0.83
민원토지과	4,186,342	0.64	3,765,975	420,367	11.16
세 정 과	893,434	0.14	892,376	1,058	0.12
회 계 과	3,227,328	0.49	2,975,328	252,000	8.47
인재육성과	10,826,787	1.65	10,773,365	53,422	0.50
경제건설국	266,341,112	40.59	254,090,208	12,250,904	4.82
관광문화과	47,745,007	7.28	46,419,003	1,326,004	2.86
허 가 과	5,822,568	0.89	5,797,337	25,231	0.44
경 제 과	21,959,912	3.35	21,012,772	947,140	4.51
환 경 과	35,477,777	5.41	34,308,423	1,169,354	3.41
산 림 과	35,120,932	5.35	34,824,001	296,931	0.85
안전교통과	8,512,286	1.30	8,180,648	331,638	4.05
건 설 과	79,319,502	12.09	71,378,178	7,941,324	11.13
도 시 과	32,383,128	4.93	32,169,846	213,282	0.66
직 속 기 관	112,308,959	17.11	107,868,801	4,440,158	4.12
보건의료원	15,055,441	2.29	15,043,422	12,019	0.08
농업기술센터	97,253,518	14.82	92,825,379	4,428,139	4.77
의회사무과	1,247,593	0.19	1,234,593	13,000	1.05
상하수도사업소	16,437,808	2.50	15,842,203	595,605	3.76
읍 면	5,381,382	0.82	5,306,662	74,720	1.41

○ 성질별 세출예산안은

- 인건비는 기정액 대비 224,919천원이 증액된 65,591,437천원
- 물건비는 1,979,055천원이 증액된 42,405,190천원
- 경상이전비는 1,786,176천원이 증액된 195,793,631천원
- 자본지출은 14,005,731천원이 증액된 291,938,418천원이 각각 편성되었음.
- 보전재원은 기정액 대비 변동없이 2,316,200천원
- 내부거래는 1,032,485천원이 증액된 36,216,701천원
- 예비비및기타는 1,984,841천원이 증액된 21,976,849천원이 각각 편성되었음.

【성질별 현황】

	н	2회추경예	안	기기에	비교증건	}
구	분	예산액	%	기정액	증감액	%
합	계	656,238,426	100	635,225,219	21,013,207	3.31
인 건	刊	65,591,437	10.00	65,366,518	224,919	0.34
물 건	刊	42,405,190	6.46	40,426,135	1,979,055	4.90
경 상 이	전	195,793,631	29.84	194,007,455	1,786,176	0.92
자 본 지	출	291,938,418	44.49	277,932,687	14,005,731	5.04
융자및	출자	0	0.00	0	0	0.00
보 전 재	원	2,316,200	0.35	2,316,200	0	0.00
내부거	래	36,216,701	5.52	35,184,216	1,032,485	2.93
예비비및	기타	21,976,849	3.35	19,992,008	1,984,841	9.93

3. 특별회계

- □ 2023년도 제2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4,803,253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703,935천원이 증액**된 규모로
 - 공기업특별회계는 26,691,170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195,512천원이 중액되었으며,
 - 기타특별회계는 48,112,083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508,423천원이 중액되었음.

【특별회계 예산현황】

ユ			ъ	2회추경예	산안	기정액	비교증	감
구			분	예산액	%	기정택	증감액	%
특	별	회	계	74,803,253	100	72,099,318	2,703,935	3.75
공기업특별회계				26,691,170	35.68	25,495,658	1,195,512	4.69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특별회계	26,691,170	35.68	25,495,658	1,195,512	4.69	
기타특별회계		48,112,083	64.32	46,603,660	1,508,423	3.24		
의.	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586,423	0.78	586,423	0	0.00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특별회계		213,127	0.29	213,127	0	0.00		
	공단지 업특별		및관리	1,217,039	1.63	1,196,039	21,000	1.76
수	질개선	[특별:	회계	46,095,494	61.62	44,608,071	1,487,423	3.33

Ⅳ. 검토결과

1. 예산안 총규모

-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31,042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3.717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O 일반회계는 656,238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1,013백만원(3.31%) 증액되고
 - **특별회계는 74,803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704백만원**(3.75%)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21,013백만원**이 증액된 **656,238백만원**임.
 - **지방세수입**은 기정액 대비 변동없으며,
 -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1,576백만원이 증액된 20,797백만원으로 이자수입 1,000백만원, 기타수입 504백만원, 부담금 40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3,015백만원**이 증액된 **340,797백만원**으로 특별교부세 2,508백만원, 지방소멸대응기금 50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조정교부금은 기정액 대비 945백만원이 증액된 12,802백만원으로 일반조정교부금 195백만원, 특별조정교부금 750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2,681백만원이 증액된 194,742백만원으로 국고보조금 1,958백만원, 시·도비보조금 723백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3.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21,013백만원이 증액된 656,238백만원임.
 - 정책사업은 기정액 대비 **17,959백만원**이 증액된 **535,227백만원**
 - 재무활동은 3,017백만원이 증액된 51,572백만원
 - O 행정운영경비는 36백만원이 증액된 71,440백만원이 편성되었음.

O 기능별 세출예산은

농림해양수산 141,752백만원(21.60%) 사회복지 114,563백만원(17.46%) 문화및관광 90.756백만워(13.83%) 등의 순으로 배분되었으며

○ 조직별 세출예산은

- 농업기술센터 97,254백만원(14.82%)
- 건설과 79,320백만원(12.09%)
- 가족복지과 73,665백만원(11.23%)순으로 편성됨.

- 기정액 대비

- ・민원토지과 11.16%(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420백만원 등)
- · 건설과 11.13%(군도15호선 보행로 정비사업 1,580백만원, 심평원 인프라지원 우회도로(대관령 208호선) 개설공사 1,100백만원 등)
- · 회계과 8.47%(행정안전부 파견직원 관사 전세금 220백만원 등) 순으로 증액되었음.

O 성질별 세출예산은

자본지출 291,938백만원(44.49%) 경상이전 195,794백만원(29.84%) 인건비 65,591백만원(10.00%) 등의 순으로 배분되었습니다.

4.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

- □ 2023년도 제2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4.803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704백만원이 중액 편성되었음.
 -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196백만원**이 증액된 **26,691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대화면 대화5리 노후관로 교체공사 공사비 증액 및 대화4리 상수관로 확장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편성에 따른 것임.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및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으며,
 -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21백만원**이 증액된 **1,217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방림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보수비 증액에 따른 것임.
 -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487백만원이 증액된 46,095백만원이며,
 평창강 물환경 체험센터 조성사업 공사비 증액, 평창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등에 따른 것임.

5. 계속비사업

- □「지방자치법」제143조에 따라 계속비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업은 총35개 사업으로,
 - 총사업비는 563,219백만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1,486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 신규 편성된 사업은 없음.

【계속비 사업내역】

[단위: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총사업비		2022년	2023년	2024년
선민	가 됩	73	당초	변경	증감	까지	2023연	이후
합계	35 개사역	겁	561,732	563,218	1,486	194,508	118,030	245,488
1	평화 테마파크 조성	3	35,750	35,750	0	17,000	18,750	0
2	지하시설물전산화시	·업-2단계	2,815	2,815	0	714	1,107	994
3	도로와 지하시설물 (3단계)	전산화사업	3,222	3,222	0	0	500	2,722
4	평창 수학아카데미이	조성사업	8,250	8,250	0	4,826	1,424	2,000
5	평창 에코랜드 조성	3	8,700	8,700	0	8,700	0	0
6	행복+학습센터 조성		17,600	17,600	0	4,580	4,410	8,610
7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23,100	23,100	0	500	3,420	19,180
8	대화천 생태하천복·	원사업	24,200	24,200	0	6,305	7,549	10,347
9	비점오염저감사업(회	횡계천)	6,154	6,154	0	3,869	2,284	0.9
10	평창강 물환경 체험	념센터조성	9,700	9,700	0	5,100	4,600	0
11	하송빈 농어촌마을하	하수도 증설	11,601	11,627	26	2,863	8,764	0
12	평창 공공하수처리	장 증설	20,619	20,619	0	2,526	1,830	16,263
13	여만처리분구 외 62 하수관로 정비사업	개소	28,125	28,125	0	2,886	1,279	23,960
14	봉평 공공하수처리	시설 확충	13,614	13,614	0	1,303	157	12,154
15	백운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		19,792	19,792	0	1,036	223	18,533
16	하안미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		9,500	9,500	0	687	399	8,414
17	도돈 농어촌마을하수도 신설		6,475	6,475	0	422	373	5,680
18	창리 소규모마을하	6,001	6,001	0	0	803	5.198	
19	평창 치유의 숲 조	성	5,300	5,300	0	2,100	1,800	1,400

연번	사 업 명		총사업비		2022년	2023년	2024년
101	/1 · 1 · 7	당초	변경	증감	까지	2023년	이후
20	평창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5,400	5,400	0	1,500	2,600	1,300
21	장암산 하늘자연휴양림 조성사업	8,650	8,650	0	2,000	3,650	3,000
22	청옥산 은하수 산악관광 허브구축	15,000	15,000	0	2,375	3,125	9,500
23	산양삼 융복합 지원센터 조성	9,800	9,800	0	500	6,000	3,300
24	흥정천(용평지구) 지방하천 정비	25,594	25,594	0	19,967	5,627	0
25	아랫상리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10,300	10,300	0	10,300	0	0
26	대미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27,100	27,100	0	11,306	5,012	10,782
27	수하리3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	31,261	31,261	0	6,614	2,600	22,047
28	수하리2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	9,929	9,929	0	5,721	2,552	1,656
29	후명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구 정비사업	20,745	20,745	0	4,073	1,800	14,872
30	하진부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	35,000	35,000	0	5,900	8,780	20,320
31	개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5,200	5,200	0	0	252	4,948
3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9,100	39,100	0	23,000	8,000	8,100
33	누구나농장 농업체험복합단지조성	11,460	12,920	1,460	320	3,360	9,240
34	용평·진부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26,675	26,675	0	26,675	0	0
35	안미지구 농촌생활용수 개발	20,000	20,000	0	8,840	5,000	6,160

6. 종합검토의견

□ 세입예산안을 보면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은 **총 23,717백만원 규모**로 주요재원은 **지방교부세 3,415백만원**, **조정교부금 1,195백만원**, 보조금 3,720백만원으로 기정예산 편성이후 증가분 등의 확정금액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 1,582백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2,818백만원 등 보전수입및내부거래 13,80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세출예산안을 보면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증액된 금액은 총 23,717백만원**으로
 - 금회 편성된 **300백만원 이상 신규 및 증액 편성**된 예산은 **18개사업에 31,196백만원**이며,
 - 국도비보조사업을 제외한 **자체사업 신규 및 증액 편성된 예산**은 8개**사업에 6,940백만원입**니다.
 - 국도비 보조사업은 349,032백만원으로 1회추경(343,726백만원) 대비 5,307백만원이 중액되었으며 이 중 군비부담액은 1,587백만원입니다. (※ 국도비 보조사업 총괄현황 : 예산안 설명자료 P9)
- 신규·증액 편성된 **토지 및 건물 취득예산**은 **6개사업 15,314백만원**이며 공유재산 취득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 「지방재정법」제45조에 의하면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 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 3개사업 95백만원의 성립전 편성분이 2회 추경에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 O 2023년도 본예산 및 추경예산 의결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재편성 제출된 예산은 없으며 출연금 편성예산 또한 없습니다.
- 「지방자치법」제144조 및 「지방재정법」제43조 제1항에 따라 일반 예비비는 회계별 예산총액의 1% 이내로 편성하여야 하는 바, 제출된 추경안의 일반회계 일반예비비(5,000백만원)은 일반회계 예산총액

(656,238백만원)이 3.31% 증액되면서 0.79%에서 0.76%로 비중 축소되어 한도 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2023년 8월말 기준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건(우박피해농가지원) 90백만원입니다.

○ 평창군 공공의료 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은(예산안 p257, 설명자료 p213) 지역사회의 의료서비스 개선방안 및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70백만원을 신규 편성 요청한 건으로,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2023 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8개월 동안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편성단계부터 이월을 전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경예산은 추가 확보된 재원 범위 내에서 필수 소요액을 우선 반 영해야 하므로 추경에 편성될 정도의 시급성 유무와 금년도 당초예 산에 편성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예산의 이월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필요한 최소의 범위 내에서 활용되어야 할 것이며, 예산을 편성 요청할 때에는 회계연도 종료 전까지의 추진가능한 일정을 검토하여 「지방재정법」제36조 제1항2)에 따라 면밀히검토한 후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당초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고 부득이한 경우로 한정하여예산의 이월이 고려되어야 할 것3)으로 사료됩니다.

○ 계속비 사업의 경우 사업 총액이 563,219백만원으로 책정되어 제1회 추경 대비 1.486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본 예산 대비 17.987백만원이

□ 연구용역비(207-01)

²⁾ 제36조(예산의 편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표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

O 연구용역결과를 행정에 활용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사장하거나 용역결과가 지나치게 이상에 치우쳐 실제 활용이 곤란한 사례가 없도록 용역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O 중복과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지양하고 연구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노력한다.

[○]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회계연도 내(출납폐쇄기한 내)에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연부액도 제1회추경 대비 1,205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사업량 증가, 물가변동, 현장여건에 따른 사업비변동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년 계속비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본예산	제1회추경	제2회추경	본예산 대비 증감
사업수	33	35	35	2
계속비 총액	545,232	561,733	563,219	17,987

【2023년 계속비 사업 연부액 현황】

(단위: 백만워)

구 분	총액	~2021	2022	2023	2024	2025~
본예산	545,232	86,743	107,764	102,004	229,203	19,517
제1회추경	561,733	86,743	107,764	116,826	206,971	43,428
제2회추경	563,219	86,743	107,764	118,031	207,252	43,428

계속비는 수년이 소요되는 공사나 사업에 대하여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수년간의 예산이 안정적으로 편성되어 투자의 안정성을 높이고 사업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한번 대상사업으로 결정되면 당초 계획된 연부액이 연차적으로 예산에 반영되어 재정지출의 경직성이 심화되고 사업의 지연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의 35개 계속비 사업이 향후 기간 연장 및 사업비 증액없이 계획된 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과 재해복구 및 현안사업, 보조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등 최소한의 사업비로 추가 편성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특 히 농자재 등 고물가에 따른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등 다양 한 분야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선8기 공약인 행복하고 살기좋은 평창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추진의 동력 확보를 위하여 예산안을 편 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됩니다.

○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편성 후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사유로 추가하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조정하기 위해 제출하는 것이므로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목적적합성, 예측불가능성, 보충성 및 시급성, 연내 집행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예산이 적정하게 배분되어 모적 사업의 투자 효용이 달성될 수 있는지 면밀하게 심사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경안 편성의 일반요건】

요 건	주요 내용			
목적적합성	추경안 편성의 원인이 되는 상황을 완화·해소할 수 있을 것			
예측불가능성	추경안 편성 사유가 본예산 편성·심사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일 것			
보충성 예비비를 포함한 본예산 등 다른 수단으로 상황극복이 곤란할 것				
시급성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간적 급박함이 있을 것			
연내집행가능성	해당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경안을 구성할 것			

○ 이 밖에 본 추가경정 예산안의 각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와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2023년 제2회 추경 주요 편성현황

1. [표1] 3억원 이상 편성된 예산

구 분	예 산 액(백만원)	비고
7개부서 / 18개사업	31,196	P22

2. [표2] 토지 및 건물 취득예산 편성내역

구 분	예 산 액(백만원)	비고
5개부서 / 6개사업	15,314	P26

3. [표3] 연구용역비(207-01, 207-02)편성현황

구 분	예 산 액(백만원)	비고
5개부서 / 5개사업	234	P27

4. [표4] 민간위탁사업(307-05,402-03) 편성현황(신규 • 증액)

구 분(예 산 액(백만원)	비고
2개부서 / 2개사업	28,172	P31

5. [표5] 행사(축제)성 예산(201-03, 307-04) 편성현황(신규 · 증액)

구 분	예 산 액(백만원)	비고
7개부서 / 7개사업	382	P28

6. [표6] 자산취득비(405-01) 편성 현황

구 분	예 산 액(백만원)	비고
7개부서 / 7개사업	264	P34

7. [표7] 성립전 사용예산 현황

구 분	예 산 액(백만원)	비고
2개부서 / 3개사업	95	P35

※ [표1] 주요사업 현황(300백만원 이상 증액)

(단위:백만원)

		예	 산 액(백민		(단위:백만원 <i>)</i> 비고
소관부서	사 업 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예산서P)
합 계	18개 사업	31,196	16,911	14,285	
복지정책과	지역자활센터 건립공사	2,000	1,500	500	P164(자체사업)
민원토지과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819	399	420	P177(자체사업)
경제과	농어촌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위탁비	730	360	370	P209(국도비)
(2)	평창 워케이션 거점센터 조성	507	0	507	P212(지방소멸 대응기금)
환경과 (수질개선특별회계)	평창강 물환경 체험센터 조성사업	14,252	12,812	1,440	P343(기금)
	도로보수 및 제설용 자재 구입	691	210	481	P233(자체사업)
	군도1호선(약수리) 재해복구사업	800	0	800	P233(자체사업)
	군도15호선 보행로 정비사업	1,580	1,000	580	P234(조정교부)
-1.11.1	군도8호선(장평, 갈정지) 도로 확포장사업	800	0	800	P234(특별교부)
건설과 (9)	대관령208호선 개설공시4)	1,100	0	1,100	P234(자체사업)
	하천 재해복구사업	570	150	420	P235(자체사업)
	오대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1,100	0	1,100	P235(특별교부)
	농로 재해복구사업	460	0	460	P236(자체사업)
	ICT기반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 체계구축	800	0	800	P237(특별교부)
· 농산물유통과	수출전문 첨단 ICT 생산단지 육성	960	480	480	P269(국도비)
(2)	친환경 농자재(비교가격안정) 위탁비	2,777	0	2,777	P270(국도비)
(공기업특별회계)		750	0	750	P364(특별교부)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개선특별회계)	평창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500	0	500	P348(자체사업)

※ [표2] 토지 및 건물 취득예산 편성현황(신규·증액)

(단위:백만원)

소관부서	사 업 명	편성액	비고(예산서P)
계	6개 사업	15,314	
복지정책과	지역자활센터 건립공사	2,000	P164
경제과	평창워케이션 거점센터 조성	507	P212
환경과	평창읍 환경미화원 대기실 및 차고지 설치	250	P216
201	평창강 물환경 체험센터 조성사업	3,617	P347
도시과	대관령 공공주택 건립 토지매입	5,580	P242
농정과	누구나농장 농업체험복합단지조성 부지매입	3,360	P268

- 의결(또는 심의) 내역

사 업 명	공유재산 의결시기
지역자활센터 건립공사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변경
평창워케이션 거점센터 조성	미대상
평창읍 환경미화원 대기실 및 차고지 설치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변경
평창강 물환경 체험센터 조성사업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대관령 공공주택 건립 토지매입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변경
누구나농장 농업체험복합단지조성 부지매입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변경

^{4) 2023}년 제3차 자체 투자심사사업 심의시 조건부 승인됨.(23.08.24)

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나. 심평원과 협의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교통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

※ [표3] 연구용역사업(207-01, 207-02) 편성현황⁵⁾

(단위:백만원)

소관부서 사 업 명	편성액			비고	
조원구시	ं भिर्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예산서P)
계	5개 사업	234	0	234	
행정과	직무분석 및 직무체계 고도화 연구용역	22	0	22	P149
회계과	재정 및 계약정보공개시스템 구축	22	0	22	P185
관광문화과	대화산성 학술조사 용역	20	0	20	P200
환경과	오대천상류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및 타당성조사 용역	100	0	100	P215
의료지원과	평창군 공공의료 체계 개선방안 용역	70	0	70	P257

※ [표4] 민간위탁(307-05,402-03)예산 편성현황(신규·증액)

(단위:백만원)

소관부서 사업명		편성액		비고	
조선무지	/ 변경 	예산액	기정액	중감액	(예산서P)
계	12개 사업	28,172	353	2,819	
안전교통과	특별교통수단 운영 위탁금	395	353	42	P228(기금)
농산물유통과	친환경농자재 위탁비	2,7777	0	2,777	P270(국도비)

^{5) 2023}년 제3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시 5개 사업 원안의결됨.(23.08.24)

- □ 심의대상
- 연구용역비(207-01) 및 전산개발비(207-02)로 편성되는 학술, 연구, 계획, 전산개발 등의 용역
- □ 심의제외 대상
- O 시설비 및 부대비(401)로 추진되는 기본조사와 공사설계용역 및 감리용역, 종합기술용역
- O 전액 국비나 국가보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 O 관계 법령에서 실시하도록 정한 용역
- O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용역

※ [표5] 행사축제성(201-03, 307-04)예산 편성현황(신규·증액)⁶⁾

(단위:백만원)

소관부서	사 업 명	편성액			비고
		예산액	기정액	중감액	(예산서P)
계	7개 사업	382	61	321	
올림픽체육과	군수배 종목별 대회지원	64	61	3	P157(자체)
인재육성과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청소년참여활동비	20	0	20	P189(자체)
관광문화과	대관령 눈꽃축제 행사보조금	280	0	280	P198(자체)
경제과	청년 정책 네트워크 행사운영	2	0	2	P212(자체)
안전교통과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지원	4	0	4	P228(자체)
건강증진과	통합건강증진사업 행사운영비	6	0	6	P253(도비)
의료지원과	전국보건의료원 워크숍 개최	6	0	6	P257(자체)

□ 심사대상

O 신규 행사·축제 관련 행사운영비(201-03), 행사실비 지원금(301-11), 민간행사사업보조 (307-04), 행사관련시설비(401-04)

□ 제외대상

- O 신규사업이 아닌 행사(연례반복,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
- O 정부 승인 국제행사(국가 주관·주최 행사)
- O 투자심사 대상사업
- O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사업(국·도비 보조사업 등)
- O 행사성 사업비 전액이 참가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적 경비(식비, 교통비, 숙박비)인 경우
- O 보조금 심의 대상 사업

^{6) 2}회추경예산 신규 행사·축제성 사업 사전심사 대상 3개사업(굵은색) 적정 의결됨.(23.08.24)

※ [표6] 자산취득비(405-01)예산 편성현황(신규・증액)

(단위:백만원)

소관부서	사 업 명	편성액			비고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예산서P)
계	7개 사업	264	4	260	
복지정책과	복지회관 물품구입	9	4	5	P161(자체)
가족복지과	종부고령자복지주택 노인복지회관 기 자재 구입	200	0	200	P168(자체)
관광문화과	편의시설 운영 제빙기 구입	3	0	3	P199(자체)
환경과	암롤박스 구입	20	0	20	P216(자체)
산림과	인화물질 제거용 파쇄기	30	0	30	P222(교부금)
농산물유통과	이중 캐비닛 구입	1	0	1	P274(자체)
진부면	흑백 프린터 구입	1	0	1	P287(자체)

※ [표7] 성립전 사용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소관부서	사 업 명	예산액	비고
계	3개 사업	95	
안전교통과	수상안전 인명사고 예방시설 구축	8	1차(특별교부)
농산물유통과	친환경 농산물 유통활성화	8	2차(도비)
	2023년 우박피해농가 지원	79	2차(도비)

V.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43조(계속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으면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45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4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지방재정법

-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 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